

#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27.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0. 20. 서종수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2020. 10. 20.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0. 10. 27.)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김기석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달리 동 조례에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 관련 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달리 동 조례에서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 삭제(안 제9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또는 주민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시 이의 조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9조에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50명 이상의 연서” 라는 제한이 없음.
- 따라서, 개정 대상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하는 ‘법령 우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조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로 인·허가, 신고 등을 신설하거나 의무사항 신설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으므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참고자료】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군·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군·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조정 신청) 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 및 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인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